

의 안 번 호	제 호	의 결 사 항
의 결 연 월 일	2022. . . (제 회)	

육 군 미 사 일 사 령 부 령 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국방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2. . .

법 제 처 심 사 전

1. 의결주문

육군미사일사령부령 일부 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'21년 5월 한·미 미사일지침 종료에 따른 육군미사일사령부의 능력 증강과 병행하여 날로 증대되는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한 우리군의 전략적 억제 및 대응능력 강화를 위하여 국방개혁 2.0과 연계한 육군미사일사령부의 개편과정에 대한 부대위상 제고차원의 부대명칭 변경과 임무를 변경할 목적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국군조직법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(2022. 0. 00. ~ 00. 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육군미사일사령부령 일부개정령안

육군미사일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육군미사일사령부령”을 “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령”으로 한다.

제1조제1항 중 “육군미사일사령부”를 “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육군미사일사령부는 적지중심 작전지역에서의 타격 작전과”를 “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는 전략적·작전적 표적 타격임무를 수행하며,”로 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육군미사일사령부령”을 “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령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 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육군미사일사령부”를 “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”로 한다.

②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1항제1호가목 중 “육군미사일사령부”를 “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”로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육군미사일사령부령</u>	<u>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령</u>
제1조 (설치와 임무)	제1조 (설치와 임무)
① 육군에 <u>육군미사일사령부</u> 를 둔다.	① ---- <u>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</u> --.
② <u>육군미사일사령부</u> 는 적지중심 작전지역에서의 타격작전과 예하부대의 평시 및 전시 지휘통제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.	② <u>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</u> 는 전략적·작전적 표적 타격임무를 수행하며, ----- ----- -----.
제2조 (사령관 등의 임명)	제2조 (사령관 등의 임명)
① <u>육군미사일사령부</u> (이하 " <u>사령부</u> "라 한다)에	① <u>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</u> ----- ----- -----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방부 조직총괄담당관실	
연 락 처	(02) 748 - 6562